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7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4월 27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은 재해·재난 등의 발생 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중의 하나이나, 재해·재난으로 인한 영업상 피해에 대해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.
- 이에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.

2. 주요내용

-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(안 제10조의4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생략)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4(재난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)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4(재난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)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